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감사의견

우리는 학교법인 국제대학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학교법인 국제대학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국제대학교 교비회계의 2023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 및 합산운영계산서,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합산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수익사업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학교법인 국제대학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국제대학교 교비회계의 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자금수지 및 재무성과와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 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사항

학교법인 국제대학교의 2022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2년 4월 14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학교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학교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학교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국제대학교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 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금액과 공시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 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 검사, 내부감사인 면담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에 의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 의견

우리의 확인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15(역삼동, JW 타워)

회계법인 예광

대표이사 주홍희

2023년 4월 17일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22.3.1. ~ 2023.2.28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학교명	국제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여부				
	법인에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 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당	없	음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였는지 여부	해		당	없	음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해		당	없	음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당	없	음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해		당	없	음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 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	없	음
7. 그 밖에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해		당	없	음

*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란에 (O) 표시

제무제표 외 확인사항 세부 내역

회계연도	2022.3.1.~2023.2.28	학교법인명 국제대학교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학교명	국제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내용	관련 법령	위반 금액 (단위:천원)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 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일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적정하게 표시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7. 그 밖에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 건			

· 외부 감사인의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 법인일반회계 - 특이사항 없음
 2. 교비회계 - 특이사항 없음
 3. 수익사업회계 -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므로 고수익확보 노력 필요함
 4. 부속병원회계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중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 * 기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회계연도	중요한 재무정보	학교법인명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대학교명	국제대학교
구 분	중요한 재무정보	비 고	
• 법인일반 업무회계	1. 예금 보유 현황 : 예금의 용도 및 예금종류, 금액, 사용제한 사항 등		
• 법인수익 사업회계	2. 투자유가증권 보유 현황 : 종목, 보유목적(또는 취득사유), 주당가액, 주수, 취득가액 및 공정가액 등		
• 교비회계	3.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 현황 : 유형자산 별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 증감내역, 사용수익권, 장부가액, 사용제한 사항 등		
• 부속병원 회계	4. 차입금 현황 : 관할청 허가 여부 및 차입처, 용도, 차입액, 차입금 증감 내역, 차입일, 상환일, 이자율, 상환회계 등		
	5.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감내역		
	6. 적립금 현황 : 적립금 구분별 증감 내역 및 적립재원, 사용내역 등		
	7. 계류중인 소송사건 : 계류법원, 원고 및 피고명, 사건내역, 소송가액, 진행상황 등		
	8. 특수관계자 현황 및 특수관계자 거래		
	9.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 후(결산 이후) 발생한 중요 재무사항		
	10. 대손상각 내역 : 관련 계정 및 대손상각액, 거래처 등		
	11. 법원 판결에 의한 중요한 손해배상금 및 관계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된 중대한 과태료 및 벌금 등 납부 실태		
	1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학교운영경비부담률 법령 기준 준수 현황		
	13. 기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		
상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별도의견이 있을 경우 :			
별도의견 없음			
※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